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은혜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회 변화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수시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계고에서의 교육 및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진로에 맞는 과목 개설 등 지원

3. 주요내용

가. 교원양성기관 및 교육감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표시과목 신설을 요청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통해 표시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진행예정 ('20.9~10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 비고란에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현 표시과목 외 새로운 과목을 담당할 교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수시인정 표시과목으로 인정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원양성 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”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학 교 별	자 격 별	표 시 과 목	학 교 별	자 격 별	표 시 과 목
중 등 학 교	정 교 사 (1 급 및 2 급)· 준 교 사	국어, 수학, 통합과학, 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과학, 통합사회, 일반사회, 역사, 지 리, 도덕·윤리, 상담, 진로진학상담, 교육 학, 종교, 철학, 심리학, 환경, 체육, 교련, 음악, 미술, 한문, 영어, 독일어, 프랑스어, 중국어, 스페인어, 일본어, 러시아어, 아랍 어, 베트남어, 기술, 가정, 기술·가정, 무 용, 식물자원·조경, 동물자원, 농공, 농산물 유통, 식품가공, 사진, 디자인, 공예, 정보· 컴퓨터, 전기, 전자, 통신, 기계, 재료, 화 공, 섬유, 자원, 환경공업, 건설, 세라믹, 인쇄, 상업, 수산·해양, 항해, 기관, 냉동, 의상, 관광, 조리, 미용, 연극영화	중 등 학 교	정 교 사 (1 급 및 2 급)· 준 교 사	국어, 수학, 통합과학, 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과학, 통합사회, 일반사회, 역사, 지 리, 도덕·윤리, 상담, 진로진학상담, 교육 학, 종교, 철학, 심리학, 환경, 체육, 교련, 음악, 미술, 한문, 영어, 독일어, 프랑스어, 중국어, 스페인어, 일본어, 러시아어, 아랍 어, 베트남어, 기술, 가정, 기술·가정, 무 용, 식물자원·조경, 동물자원, 농공, 농산물 유통, 식품가공, 사진, 디자인, 공예, 정보· 컴퓨터, 전기, 전자, 통신, 기계, 재료, 화 공, 섬유, 자원, 환경공업, 건설, 세라믹, 인쇄, 상업, 수산·해양, 항해, 기관, 냉동, 의상, 관광, 조리, 미용, 연극영화
	특 수 학 교	정 교 사 (1 급 및 2 급)· 준교사		1. 중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 하지 아니한다. 2. 이료과목(안마, 마사지, 지압 등의 수기 요법과 전기치료, 침구 등의 자극요 법 등을 포함한 과목)은 이료로, 치료 교육과목은 재활복지로, 직업교육과 목은 직업교육으로 각각 표시한다.	
	초 등 학 교	정 교 사 (1급 및 2급)		도덕·국어·수학·사회·과학·체육·음악·미 술·실과·영어	
			비고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현 표시과목 외 새로운 과목을 담당할 교 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수시인정 표시 과목으로 인정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841